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구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제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조~제9조)
- 회의의 운영 및 공개(안 제11조~제12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3조)
- 위원회 관리 및 정비(안 제15조)
-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 개별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21. 8월 말 기준 156개에 달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된 기준 마련으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임.

○ 검토 결과,

- 위원 중복위촉 금지, 연임 금지, 위원회 성비 불균형 해소, 회의 공개, 회의록 작성 의무화,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또는 폐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제한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